

의정활동보고서

제171회 임시회 (2002. 8. 27 ~ 9.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17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해현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에 치루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방향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표율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도내의 농어촌실정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늘과동으로 인하여 마늘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해로 인하여 땀흘려 지은 농사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줄지에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으로 부터 시작된 적조현상으로 도내의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방정부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연수회와 경상북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의원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연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회기동안 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생산적인 의회상을 심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8. 27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활동사항

4. 기타사항

VI. 5분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승인안

☐ 건의안

☐ 결의안

☐ 기 타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1회 임시회는 2002년 8월 27일 개최하여 9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1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8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강영서의원)을 청취한 후 제171회 회기결정의건, 2002년도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하였다

9월 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응규·김성하·김기대·이현준의원)을 청취한 후 2002년도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2년도 경상북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2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20년대구권광역도시 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의효과적인복구를위한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고 제17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요구 : 장대진 의원외 19인

다. 집회공고일 : 2002. 8. 14

라. 집 회 일 : 2002. 8. 27(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8. 27 ~ 9. 6 (11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6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15	2	1	1	1	2	2	2	4
누계	36	4	4	4	4	6	5	5	4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 8.27(화) 11:00	1. 제1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 5. 회의록서명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제 1 차 원안가결
9. 6(수) 11:00	1.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02년도 경상북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2002년도 경상북도 농수산물 직판장 운용기금 운용 계획안 9.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0. 2002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1. 경상북도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2.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	제2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8.27(화) 14:00	1.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72회 정례회 회기협의 3.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9. 6(금) 10:00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견 2.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 2 차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8.30(금)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2. 2002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9.2(월) 10:00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여성국 - 경도대학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9.2(월)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8.30(금)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2. 2002년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 계획안 3.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9. 3(화) 11:00	1.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상황보고 - 농수산국	제 2 차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8.30(금)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2. 2002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9. 2(월)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2.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8.30(금)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 - 소방본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9. 6(금) 10:00	1.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의효과적인 복구를위한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에 관한건의안	제 2 차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8.27(화) 11:0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 위원장 장대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 - 간사 우성호	제 1 차
9. 3(화) 10: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경도대학, 문화체육 관광국	제 2 차
9. 4(수) 10: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제 3 차
9. 5(목) 10:00	1.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2.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제 4 차 수정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11 (16)	11 (16)	11 (16)				(2)	
조 례 안	소계	4 (7)	4 (7)	4 (7)					
	의 회 제 안								
	도지사 제 출	4 (5)	4 (5)	4 (5)					
	교육감 제 출								
예산·결산		1 (1)	1 (1)	1 (1)				(2)	
동의·승인		3 (3)	3 (3)	3 (3)					
건 의 안		1 (2)	1 (2)	1 (2)					
결 의 안		1 (2)	1 (2)	1 (2)					
기 타 안		1 (1)	1 (1)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11 (16)	11 (16)	4 (7)	1 (1)	3 (3)	1 (2)	1 (2)	1 (1)			(2)
의회운영	2 (3)	2 (3)	1 (1)			1 (1)	1 (1)				
기 획	1 (1)	1 (1)			1 (1)						
행정사회	1 (2)	1 (2)	1 (2)								
교육환경	(2)	(2)	(2)								
농 수 산	2 (3)	2 (3)	1 (1)		1 (1)	(1)					
산업관광	2 (2)	2 (2)	1 (1)		1 (1)						
건설소방	2 (2)	2 (2)					1 (1)	1 (1)			
특 별	1 (1)	1 (1)		1 (1)							
본회의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8)			1 (2)	(1)	1 (1)	1 (1)	1 (2)	1 (1)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2 (2)					1 (1)		1 (1)		
농 수 산	(1)				(1)					
산업관광	1 (1)						1 (1)			
건설소방	2 (3)			1 (1)				(1)	1 (1)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4)	4 (4)				4 (8)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1 (1)				(1)
교육환경						2 (2)
농 수 산	1 (1)	1 (1)				(1)
산업관광	1 (1)	1 (1)				(1)
건설소방	1 (1)	1 (1)				2 (3)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2. 8. 12)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업관광 (2002. 8. 13)
경상북도지사 (2002. 8. 12)	2002년도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 운용계획안	농 수 산 (2002. 8. 13)
경상북도지사 (2002. 8. 12)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농 수 산 (2002. 8. 13)
경상북도지사 (2002. 8. 12)	2002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 계획안	기 획 (2002. 8. 13)
경상북도지사 (2002. 8. 16)	2002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산업관광 (2002. 8. 16)
경상북도지사 (2002. 8. 19)	200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상임위 (2002. 8. 19)
경상북도지사 (2002. 8. 2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2. 8. 22)
김정기의원외10 (2002. 8. 22)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 (2002. 8. 23)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2. 7.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2. 8. 1
2002. 7.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2. 8. 8
2002. 7.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 조례	2002. 8. 8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수산 위원회	2002. 8. 10 ~ 8. 11	예천군, 봉화군 일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건설소방 위원회	2002. 8. 12 ~ 8. 13	안동시, 봉화군 일원	호우피해지역 현지확인

4. 기타사항

○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 제7차회의

- 일 시 : 2002. 7. 25(목) 14:00
- 장 소 : 대구지방환경관리청
- 참 석 : 김순견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 2002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 일 시 : 2002. 7. 25(목) 14:00
- 장 소 : 김천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경북마늘판매 일일장터

- 일 시 : 2002. 7. 29(월) 11:00
- 장 소 : 한나라당경북도지부
- 참 석 : 최원병 의장, 방대선 농수산위원장, 정상진 의원

○ 전국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2. 7. 31(수)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 예천공항 제주노선 개항식

- 일 시 : 2002. 8. 1(목)
- 장 소 : 예천공항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최영욱 산업관광위원장, 김병진 의원,
이현준 의원

○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2. 8. 2(금) 11: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 참 석 : 최원병 의장

○ 경주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방문

- 일 시 : 2002. 8. 5(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이달 건설소방위원장, 신영호 교육환경위원장,
이상호, 정상진 의원

○ 대한민국 과학축전 개막식

- 일 시 : 2002. 8. 10(토) 10:30
- 장 소 : 포항종합운동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최영욱 산업관광위원장, 손경찬, 한혜련 의원

○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 일 시 : 2002. 8. 12(월) 19:30
- 장 소 :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 참 석 : 이정백 의원

○ 2003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D-365 점등식

- 일 시 : 2002. 8. 13(화) 10:30
- 장 소 : 경북도청
- 참 석 : 최원병 의장

○ 57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2. 8. 15(목) 10:00
- 장 소 : 칠곡군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만세삼창)

○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 일 시 : 2002. 8. 21(수)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을지연습근무자 격려

- 일 시 : 2002. 8. 21(수) 14:00
- 장 소 : 충무시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회

- 일 시 : 2002. 8. 21(수) 16: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의회출입 지방기자단 간담회

- 일 시 : 2002. 8. 22(목) 12: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중·정무웅 부의장, 손규삼 운영위원장

○ 적조발생해역 예찰활동

- 일 시 : 2002. 8. 23(금)
- 장 소 : 경주시 해안지역
- 참 석 : 이상효 의원

○ 도민 환경정화 활동

- 일 시 : 2002. 8. 24(토) 11:00
- 장 소 : 경주시 중앙동 서천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농촌 전통 테마마을 현지연찬회

- 일 시 : 2002. 8. 26(월) 11:30
- 장 소 :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 참 석 : 최원병 의장, 양재경 의원

VI. 5분자유 발언

□ 제1차 본회의

강 영 서 의원 (농수산위원회)

봉화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영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부터 17일까지 13일 동안 내린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봉화군에는 묘하게도 북위 37도선상의 소백산, 문수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강우량은 612mm였습니다. 이 중 8월6일, 7일 양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량은 평균 378mm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 1명, 재산피해 156억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유실로 통행이 불통되는가하면 제방붕괴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 매몰, 침수되는 등 산이 많은 봉화지역에는 산사태가 난 곳만 200여 곳이 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린 강우량에 비해 피해는 최소화되었다고 보며, 피서객 대피와 침수 예상지역 사전 배수,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공무원들의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해 본의원이 생각해도 너무도 경이로웠습니다.

지난 8월10일 농수산위원회와 8월12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군의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릴 말씀은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복구계획수립의 문제입니다.

먼저 농경지 및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생육가능한 작물 방재시 농약대, 영농자금의 이자감면, 상환연기 및 중고등학생 학비감면,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것밖에 없습니다.

복구비용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농산물 개방 등으로 농민들은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고,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이 때에 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깊은 상처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수해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복구비용부담률 중 10~30%의 자부담률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소득과 교육문제, 즉 돈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는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액 자체를 산정하지 아니한 재해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해지역을 방문해 보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농사가 되어야만 농촌인구도 감소하지 않고 지역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5월, 저의 지역구 사과 주산지에 우박이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농가는 농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민이 풍수해, 우박, 가뭄에도 안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사과, 배에만 국한하지 말고 각종 농작물에 확대 실시하여 피해발생시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사항은 첫째, 농경지 및 농작물의 수해피해 복구시 자부담률을 없애고 전액 국·지방비를 투입해달라는 것이며, 둘째, 농작물 재해조사시 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는 데 대해 향후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추정가격은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제도를 각종 작물에 확대하여 조속히 앞당기는 정책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바랍니다. 넷째, 폐광지역인 금정광업소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폐석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크나큰 피해로 인하여 영월 지역은 물론 한강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하천오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하여 세상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응급복구에 동원되어 구슬땀을 흘리는 주민과 공무원들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와 특히 수해로 인해 상심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차 본회의

김 응 규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김응규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전후세대라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를 TV나 영화로만 봐 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루사가 핏퐁하고 간 김천지역의 수해현장은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28명의 사망, 실종 등의 인명피해와 경부선 철도 교각 붕괴, 그리고 국도, 지방도는 말할 것 없고 하물며 마을 진입로까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전체 피해상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구호와 복구가 한시를 다룰 정도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지례 등 5개 면은 면 전체가 육지의 섬 마냥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 유·무선전화마저 불통되고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이 떨어 지고 식수가 고갈되어 주민들이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가축의 사료가 없어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쯤 부터는 전화가 복구되기 시작하고 전국 곳곳에서 구호품과 성금을 보내주셔서 시민과 군인, 학생 등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복구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천은 왜 물 먹이나” 하고 특별재해지구 지정문제로 여러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줄 알았던 김천시민의 분노는 지금 곧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어 그 피해현황이 바로바로 집계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김천지역은 면 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며, 교통 두절로 인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집계할 수가 없는 실정은 무시

한 채 김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시켜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김천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선포하여 수재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재해지역의 정확한 현장조사도 조사이지만 그 전에 먼저 수재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응급구호 비용과 물품공급이 더 급하고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 다음에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고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으로 김천지역의 수재민 구호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시고 며칠 전 저희 수해지역을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 위문하여 주신 도지사,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김천시민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성 하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김성하의원입니다.

죽염과 구운 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 20g을 기준으로 할 때 800pg의 다이옥신을 섭취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허용치의 3.3배에 해당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의 섭취허용량 0.6pg의 1,000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1일 섭취량을 240TEQ로 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최소한 10분의 1 수준으로 섭취량을 줄여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전 경기도 평택의 안중면 금호환경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일반인의 20배에 달하고 미국, 일본의 피해지역은 물론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 동나이 등의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책정된 혈중 다이옥신 농도 중 세계 최고치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로 1g으로 체중 50kg의 사람을 2만명 이상 사망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90% 이상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인해 지난 '90년부터 소각 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읍·면·동 별로 소형소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숫자가 2000년 통계로 전국적으로 1만5,0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5월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와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는 전국 16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간당 0.2톤 이하의 소형 소각장에서 평균 89.37ng, 0.2톤 이상 2톤까지 소각하는 중형소각장에

서 20.63ng의 고농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으며,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소형 84.01ng, 중형은 8.53ng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충격적인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조사결과를 한 마디로 국내 소각장들의 부실 운영과 정부의 소홀한 관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04개소를 포함해서 총 463개소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발생량을 측정하는 중형 소각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14개소, 그리고 사업체가 운영하는 10개소 등 2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439개소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도 없고 다이옥신을 측정할 의무도 없는 시간당 0.2톤 이하의 소형 소각시설이며, 그중에 131개소가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간당 0.2톤 이상 소각장에서 평균 120.382ng이라는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기준 40ng의 3배이며, 2000년5월 국립환경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의 조사결과인 중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 20.63ng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대형 소각장의 배출기준 0.5ng의 240배이며, '97년 이후 설치된 신형 대형소각장의 배출기준 0.1ng의 1,20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나머지 439개소에 달하는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기준도 없고 다이옥신 측정 의무도 없어 비교할 자료조차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이 발표한 소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중형에 비해서 4배나 높았던 사례에 비추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염려해 볼 뿐입니다. 더욱이 시간당 95kg의 소형 소각용량을 가진 소형 소각로에서 설치 신고대로 1일 8시간, 300일 운영할 경우에 연간 228톤밖에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톤, 1,000톤, 심지어는 2,700톤씩 처리했다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평택시 안중면 금호환경소각장의 경우에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세계 최고수치라고 한다면 배출기준을 2배 이상 15배까지 초과한 우리 도내 소각장의 인근 주민들에게서 이보다 더한 결과가 나오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처리와 소각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본위원회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자료조차 없는 시간당 0.2톤 이하 대부분의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도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회의 확신입니다.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노출된 10개 소각장은 물론 다이옥신 측정 의무도 없는 대부분의 소형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적절한 대응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경북도지사의 조치가 여의치 않을 시에는 경상북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제안해 둡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가치이며,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의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기 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성주출신 김기대의원입니다.

태풍 15호 루사호가 경북의 23개 시·군을 강타를 했습니다.

우리 최원병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을 격려하시면서 피해복구에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언론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특별지역을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하는 사항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주군 주민 50명이 지금 강당에서 지사님과 대화를 마치고, 도청강당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경북대구본부장과 지금 입씨름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성주댐 높이가 187.9미터입니다. 182.4m 밑으로는 홍수조절이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182.4m 밑으로 초당 7톤 밖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오고 폭우가 와도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다 하는 것을 어제 그저께에 주진우 국회의원님, 성주군수님, 도의원님, 실·과장, 언론이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부 남은 5.5m 그것을 가지고 홍수조절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에 남은 5.5m는 초당 800톤을 방류를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182.4m에 수장되어 있는 그 물은 2,500만톤은 물을 빼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7.2톤 외에는.

그래서 지역주민이 농업기반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 가천면, 수륜면, 고령 운수, 개진, 다산은 살인댐 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댐 목적이 농업용수용이지 홍수조절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9월1일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대책회의 석상에서 성주군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발표를 했고 9월2일 군의회에 와 가지고도

“홍수조절용이 아니다.” 또 그 날 오후에 그 밑에 지역민 200~300명을 모아놓고 “농업용수용이지 홍수조절용이 아니다” 라고 세 군데 다니면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홍수조절용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번에 60cm까지 남겨 놓고 물이 차니까 모두 대피를 하라 이래서 경찰서장이 우리면 지서에서 잠을 자면서 6개 면에 대피를 하라고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은 붕괴를 해서 피신이 아니고 피난이다, 땅 줄 때는 홍수조절용이라고 동의해 달라고 해 놓고 댐이 들어서고 나서 주민이 죽는다 하니까 설계상에 홍수조절용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중앙정부 에나 경상북도지사에게나 성주군수에게 홍수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보고를 했느냐 물으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안 했느냐? 200년 빈도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한심스러운 공직자입니다. 200년 빈도라 하는 말은 200년 만에 큰 비가 한 번 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200년 빈도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년 만에 오면 그것도 200년만에 해당이 되고 5년~6년 만에 와 버리면 그것도 해당이 또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200년 기준을 어느 해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는 몇 살 먹지 않았지만 경신년 대수가 왔는지가 72년 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온 대수가 병자년 대수가 67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0년 전에 사라호가 왔습니다. 그 다음 10몇년 전에 셀마호가 왔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금년 루마 또 이번에 루사호가 왔습니다. 이것이 '80년 이내에 이런 큰 비가 네댓 번이 왔는데 200년 만에 한번 온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mm를 기준으로 했느냐, 280m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0년 만에 오는 것이 280mm이고 1500년 만에 비가 오면 한 300mm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1500년 만에 한 번 올 것이 와 버렸습니다.

이런 공직자논리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앉아 가지고 주민을 보호하고 도민을 살피고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는 경상북도지사의 통제권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통제권을 받고 있지만 경상북도 도민이야 죽든가 말든가 이런 농수산부에 다 순종하고 거기에 눈치 잘 맞추면 되지, 왜 도의원, 여기 군민들이 잔소리가 많으냐 이 식입니다.

그래서 그 군민들은 이것 살인담 밑에 더 못 살겠으니까 이제까지 주민을 속였으니까 사전에 홍수조절예방을 못했으니 인재가 아니냐? 인재를 막으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 돈 몇 백억 다오. 182.4m 아래 물도 빼낼 수 있도록 좀 해줘! 건의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농업기반공사직원 20명은 그 댐 밑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 12시에 전기가 가고 전화가 불통된 상태에서 전부 높은 산으로, 높은 지역으로 피신을 다 했습니다.

왜, 10년이 되어도 홍수조절용이라고 PR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농업용수용이지 홍수조절 못 합니다” 라고 해 놓고 10년 만에 처음 9월1일자 기반공사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녕 질서를 보호하는 경상북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 대구·경북 본부장하고 수시로 태풍이 오면 대화를 하면서 홍수조절이 잘 되고 있느냐? 하고 물었으면 “성주댐은 홍수조절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만 듣고 주민들한테만 이야기 했더라도 미리 대피를 하고 긴급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처음 알고 군수도 처음 알고 도의원도 처음 알았고 아마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도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댐을 철거를 하라! 생명보다

더 중한 것이 용수인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쌀이고 밥입니까?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밥은 이번에 굶으면 저녁에 잘 먹으면 되고
1년 농사 폐농하면 그 이듬해 잘 지으면 됩니다.

이런 성주댐, 살인댐 밑에서 사는 성주 가천, 수륜 고령에 3개면
고령읍까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중앙정부에다가 살인댐을
철거를 하든가 영구적인 지역주민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최원병 의장님께서, 선배 의원님께서도 경상북도 내에 성주댐과 같은
그런 댐은 없는지, 대외적으로는 홍수조절용이라고 하고는 자기 신분
에 위협이 들어오면 그것은 설계상에 조절용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
는 것이 오늘날의 공직자의 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정부도 인기가 없고 오늘날의 공무원도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 때 그 때만 피해 나가면 되고 그 때 그 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농수산국장, 농산과장, 농업기반공사지사장
이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인재이지요? 당신들 개인
소견은 어떠냐, 그 농수산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의식하지 말고 내
개인 소견은 이렇지만 이것을 내 뜻을 밝히면 공무원 못해 먹고,
뭐 적당하게 연구·검토하고 슬슬 넘어가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답을 했느냐? 이 소리가 겁이 나서 못하는 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지말고 그 때 그 때 “지사님 이것은 시정
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성주지역의 성주댐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향에도 이런 부조리 한 시설이 없는지 잘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성주군민 고령군민과 같이 불안 초조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현 준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출신 이현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조용히 지내고 다가오는 음력 9월9일 중양절을 명절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건국 이래 태풍에 따른 재산피해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로 세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더라도 '99년 태풍 올가가 남긴 피해액 1조700억원의 4배가 넘는 4조300억 이상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사망, 실종 등 전국 인명피해만 215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김천시를 비롯한 성주군, 울진군, 안동시 등 모두 8,5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사망 26명, 실종 11명에 이재민 3,700세대 1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19개 마을 900세대 주민이 아직 고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교통 및 통신복구 시 그 피해액은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런 비상시기에 다가오는 추석만을 꼭 명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석에 성묘를 못했거나 세존단지를 새로 모시지 못한 경우 추석 대신에 중양절을 지키기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9일로 중양의 양은 홀수를 말하며 중양은 홀수가 겹친 날을 말합니다.

1년에 이런 날은 1월1일, 3월3일 등이 있으나 9는 양수 가운데 극양이 되므로 특별히 이날을 중양절이라 칭합니다.

옛 가정에서는 국화꽃을 따서 국화전을 만들거나 술을 담가 마시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무리 지어 좋은 곳을 찾아 하루를
즐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의 하나입니다.

이번 루사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주거지를 잃고 또 생명줄과도 같은
농경지의 침수, 유실 등으로 실의에 빠진 많은 수재민들을 생각해서
라도 추석이라고 흥청망청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어느정도 복구가 이루어진 연후 9월9일 중양절에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조상들을 찾아뵙고 성묘하는 것이 상심에 젖
은 이웃 수재민에 대한 도리이자 또한 우리의 잊혀진 고유명절을 되
찾자는 소박한 생각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4건
- 예산안 : 1건
- 동의·승인안 : 3건
- 건의안 : 1건
- 결의안 : 1건
- 기 타 : 1건

□ 조례안 : 4건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에 의한수수료징수
조례폐지조례안

□ 예산안 : 1건

-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동의·승인안 : 3건

- 2002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2002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02년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계획안

□ 건의안 : 1건

-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의효과적인복구를위한 “특별재해
지역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

□ 결의안 : 1건

-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기 타 : 1건

-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경상북도의회의견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9. 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9. 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중 “3,431”을 “3,436”으로 하고, 제1호중
“1,598”을 “1,603”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정
원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등을 위한 정원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9. 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9. 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결과

1. 제안자 및 제안일자 : 경상북도지사, 2002년 8월 19일
2. 회부일자 : 200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17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3~5)
4. 의결일자 : 2002년 9월 5일(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III. 추경예산 편성 배경

☐ 세입예산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예상액 및 누락분 정리
-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액 정리

☐ 세출예산

-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
-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 반영
-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 및 법정경비 부족분 계상

IV. 추가경정 예산(안)

1. 세입 · 세출예산 규모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88,108	100	2,264,880	100	223,228	100	9.9%
일 반 회 계	2,031,670	81.7	1,826,450	80.6	205,220	92.0	11.2
특 별 회 계	456,438	18.3	438,430	19.4	18,008	8.0	4.1
의료보호기금운영	174,270	7.0	165,770	7.3	8,500	3.8	5.1
치 수 사 업	21,918	0.9	15,000	0.7	6,918	3.1	46.1
경 도 대 학 운 영	6,950	0.3	4,360	0.2	2,590	1.1	59.4
지역개발기금운영	253,300	10.1	253,300	11.2	0	0	0

※ 재정자립도 : 28.7% (2001년도 : 31.2%)

(나)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율
합계	2,488,108	100	2,264,880	100	223,228	100	9.9%
자체수입	853,081	34.3	755,269	33.4	97,812	43.8	13.0
지방세 수입	500,000	20.1	470,000	20.8	30,000	13.4	6.4
세외수입	353,081	14.2	285,269	12.6	67,812	30.4	23.8
경상적수입	65,098	2.6	65,759	2.9	△661	0.3	△1.0
임시적수입	287,983	11.6	219,510	9.7	68,473	30.7	31.2
의존수입	1,635,027	65.7	1,509,611	66.6	125,416	56.2	8.3
지방교부세	394,237	15.9	361,565	16.0	32,672	14.6	9.0
지방양여금	189,684	7.6	204,542	9.0	△14,858	△6.6	△7.3
보조금	976,106	39.2	868,504	38.3	107,602	48.2	12.4
지방채	75,000	3.0	75,000	3.3	0	0	0

(다)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88,108	100	2,264,880	100	223,228	100	9.9%
경 상 예 산	191,052	7.7	183,894	8.1	7,158	3.2	3.9
인 건 비	97,464	3.9	95,204	4.2	2,260	1.0	2.4
경상적경비	93,588	3.8	88,690	3.9	4,898	2.2	5.5
사 업 예 산	1,754,844	70.5	1,602,072	70.7	152,772	68.4	9.5
보 조 사 업	1,442,501	58.0	1,335,195	59.0	107,306	48.1	8.0
자 체 사 업	312,343	12.5	266,877	11.8	45,466	20.3	17.0
채 무 상 환	161,092	6.5	161,092	7.1	0	0	0
예 비 비 등	381,120	15.3	317,822	14.0	63,298	28.4	19.9

※ 예비비 등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적립금, 전출금, 출연금 등임

2.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31,670	100	1,826,450	100	205,220	100	11.2%
지 방 세 수 입		500,000	24.6	470,000	25.7	30,000	14.6	6.4
세 외 수 입		109,709	5.4	54,339	3.0	55,370	26.9	101.9
	경상적경비	19,674	1.0	19,985	1.1	△311	0.2	△1.6
	임시적수입	90,035	4.4	34,354	1.9	55,681	27.1	162.1
지 방 교 부 세		394,237	19.4	361,565	19.8	32,672	16.0	9.0
지 방 양 여 금		189,684	9.3	204,542	11.2	△14,858	△7.2	△7.3
보 조 금		838,040	41.3	736,004	40.3	102,036	49.7	13.9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율
합계		2,031,670	100	1,826,450	100	205,220	100	11.2%
경상예산		186,875	9.2	179,909	9.8	6,966	3.4	3.9
	인건비	96,108	4.7	93,925	5.1	2,183	1.1	2.3
	경상적경비	90,767	4.5	85,984	4.7	4,783	2.3	5.6
사업예산		1,464,275	72.1	1,331,921	72.9	132,354	64.5	9.9
	보조사업	1,269,009	62.5	1,170,100	64.1	98,909	48.2	8.5
	자체사업	195,266	9.6	161,821	8.9	33,445	16.3	20.7
채무상환		41,242	2.0	41,242	2.3	0	0	0
예비비등		339,278	16.7	273,378	15.0	65,900	32.1	24.1

-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31,670	100	1,826,450	100	205,220	100	11.2%
일 반 행 정 비	292,326	14.4	254,810	13.9	37,516	18.3	14.7
사 회 개 발 비	773,887	38.1	705,829	38.6	68,058	33.2	9.6
경 제 개 발 비	691,161	34.0	634,883	34.8	56,278	27.4	8.9
민 방 위 비	88,129	4.3	83,204	4.6	4,925	2.4	5.9
지원및기타경비	186,167	9.2	147,724	8.1	38,443	18.7	26.0

3. 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56,438	100	438,430	100	18,008	100	4.1%
의료보호기금운영	174,270	38.2	165,770	37.8	8,500	47.2	5.1
치 수 사 업	21,918	4.8	15,000	3.4	6,918	38.4	46.1
경 도 대 학 운 영	6,950	1.5	4,360	1.0	2,590	14.4	59.4
지역개발기금운영	253,300	55.5	253,300	57.8	0	0	0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56,438	100	438,430	100	18,008	100	4.1%
	세 외 수 입	243,372	53.4	230,930	52.7	12,442	69.0	5.4
	경상적수입	45,425	10.0	45,774	10.5	△349	2.0	△0.7
	임시적수입	197,947	43.4	185,156	42.2	12,791	71.0	6.9
	보 조 금	138,066	30.2	132,500	30.2	5,566	31.0	4.2
	지 방 채	75,000	16.4	75,000	17.1	0	0	0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56,438	100	438,430	100	18,008	100	4.1%
경 상 예 산			4,177	0.9	3,984	0.9	193	1.0	4.8
	인 건 비		1,356	0.3	1,278	0.3	78	0.4	6.1
	경상적경비		2,821	0.6	2,706	0.6	115	0.6	4.2
사 업 예 산			290,569	63.6	270,151	61.7	20,418	113.4	7.6
	보 조 사 업		173,491	38.0	165,095	37.7	8,396	46.6	5.1
	자 체 사 업		117,078	25.6	105,056	24.0	12,022	66.8	11.4
채 무 상 환			119,850	26.3	119,850	27.3	0	0	0
예 비 비 등			41,842	9.2	44,445	10.1	△2,603	14.4	△5.9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2건에 당초 총사업비 658억 9천 6백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68억 9천 6백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북부지역 합동청사 건립비에 1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 하양~와촌~대구간도로 사업비에 5억원을 감액하였음

-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00	2001	2002	2003 이후	2004 이후
계	변경	66,896	12,426	15,111	17,607	10,102	11,650
	당초	65,896	12,426	15,111	16,793	10,416	11,150
	증감	1,000	0	0	814	△314	500
북부지역 합동청사건립 - 부 지 32,041m ² - 연건평 4,960m ²	변경	7,200	0	1,991	5,107	102	0
	당초	6,200	0	1,991	3,793	416	0
	증감	1,000			1,314	△314	0
하양~와촌~대구도로사업 - L : 12.6km - B : 18.5m	변경	42,300	5,030	9,120	6,500	10,000	11,650
	당초	42,300	5,030	9,120	7,000	10,000	11,150
	증감	0	0	0	△500	0	500

V.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VI. 검토의견

1. 총괄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2조 2,648억 8천만원보다 2,232억 2천 8백 만원(9.9%)이 증액된 2조 4,881억 8백만원입니다.

○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8,262억 5천만원보다 2,052억 2천만원(11.2%)이 증액된 2조 316억 7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84억 3천만원보다 180억 8백만원(4.1%)이 증액된 4,564억 3천 8백만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232억여원으로서

- 자체수입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978억원 늘어났고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1,076억원과 지방교부세 327억원은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49억원이 줄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로서

- 국고보조사업 1,195억원, 교부세 사업 216억원
- 당면 현안사업 106억원
-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반환금 347억원
- 재정보전금 153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225억원
- 경상사업비 등에 38억원을 증액하고
- 양여금 사업비 22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384억 3천만원보다 180억 8백만원이 증액된 4,564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및 도비부담전입금 등 14억원을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액 편성하고
-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억원을 지방하천보수와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 경도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을 증액하고 입학금 등 수수료 3억원을 감액하여 종합문화관 건립 및 창업보육센터 신축비 등에 편성하고
-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결산이익배당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 상임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주요 검토사항

기획위원회

- 중앙예산 지원 등으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등에 64억 5천 6백만원 계상한 것은 불가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에 만전
- 예비비에서 45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최근 도내 호우피해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방제 업무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도정시책홍보업무추진비 1천 5백만원은 도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증액, 도의회의 활동상황 홍보에도 적극 관심 표명

행정사회위원회

-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178억원의 95.9%인 170억 60백만원을 증액한 것은 결산액 추정자료가 미흡
- 교육재정교부금 33억원, 성과상여금 12억원, 독립전문대전출금 22억원, 공무상요양비 1억원, 북부지역합동청사 건립비 13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의 합리성 제고
- 국민방독면구입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1억 7천만원 보다 51.8%인 88백만원이 감액된데 대해 대책 강구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10억 46백만원과 경로연금 지급비 15억 93백만원 등 10여건의 사업비들은 시행도중 과다하게 증감 조정되어 수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재향군인 복지관 건립, 장애인자활자립장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타당성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단체 보조금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등 8건은 증감액수가 과다하여 대상단체에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모색
- 경도대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재정의 자립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확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교육환경위원회

-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진 숙소임차지원 사업비 4억 2천만원은 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의 의료진의 숙소 확보 대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가 우려됨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 해양환경연수관건립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사방사업, 임도시설, 조림사업 등은 경제성을 감안하는 한편,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
-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첨단 검사·시험·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에 예산확보 노력

농수산위원회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일부 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지적
- 2002 세계농업한마당행사의 경우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
-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병충해공동방제사업, 목재 파쇄기 공급사업,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사업, 활어위판장시설사업 등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감액되었는데 문제점으로 검토 필요
- 농수산분야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국비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등 그 원인을 신중히 검토
- 농업기술원은 타 연구기관에 비해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북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수행 재점검 필요

산업관광위원회

- 공무국외여비 2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도정홍보와 시장개척활동 등으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
- 버스업계재정지원금 17억 5천여만원은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나 충분한 타당성 조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주문
- 문화재보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공사감독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영화 및 드라마촬영지 관광자원화사업 1억 2천만원 증액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시·군간 유치 과당경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실효성을 검토
- ‘경주 술과 떡 축제’ 및 ‘청도 소싸움 축제’에 각각 국비 1천만원씩 감액된 부분을 도비로 충당한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민·관 공동 행사주최로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각종 축제행사 예산이 매년 지원되거나 증액되고 있으나 그 성과가 의문시됨으로 민·관 공동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 강구

건설소방위원회

- 지방양여금 지원감소에 따라 지방도사업 74억 5천만원,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15억 5천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계획된 사업의 추진대책 마련
-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9억 2천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지난해 세입전망이 신중치 못했다고 판단
- 건설분야는 현 지방재정 여건상 중앙지원에 의존하는 만큼, 중앙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소방장비구입과 시설확충사업은 장기계획을 수립, 고가 소방 장비는 인접소방서와 상호연계 활용방안강구, 시설사업은 엄격한 기준하에 효율성을 극대화
-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각종 재해·재난 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

3. 종합 심사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기 편성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조정·정리하여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되는데 따른 도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 전년도 결산 잉여금과 추가되는 세입재원 등을 바탕으로 지방채 발행없이 소규모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최근 국내경기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역 경제도 對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밝은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년도 우리도의 지방세는 7월말 현재 3,045억 원을 거둬들여 당초 목표액 4,700억원의 65%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300억원정도 초과한 5,000억원은 무난하게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경기 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 및 특소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 구매증가 등 기본여건이 지난해 보다 다소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인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와 새로운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의존수입중 주요 증감 사유는
 - 지방양여금의 경우 국세 중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 등 특정목적사업 수요에 충당,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취로 볼 때, 지방도 정비사업에 68억원이 감액된데 대해
 - 당초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 관련 중앙 부처와의 협조체제

-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수혜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1,020억이나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그동안의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내시 또는 증액교부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다만,
 - 기왕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했다면 중앙계획이 빨리 확정·시달되어 도로, 교통, 치수, 농어촌 기반사업 등 현안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상반기에 편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면 현안사업인 북부지역 합동청사 건립, 전국체전 참가 및 도민체전개최 지원, 2002 세계농업 한마당 행사지원 및 전시관 건립,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다면 사업시기의 적절성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사업비중 전액 삭감하거나 삭감율이 높은 경비는 사전에 법적근거와 소요추계를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도민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해결에 다소나마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특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건물 신축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문제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점차적으로 도 예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의 소지도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VI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증감조서 - “별첨”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2002경 상북도제1회추경 예산안 증감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액	비고
	합 계	9건	489,589	
	소 계	2건	220,000	
16	의회사무처	ENG카메라및편집장비구입	200,000	
17	“	국제회의및자치단체공식행사참석여비	20,000	
	소 계	2건	116,589	
41	기획관리실	경북인의생활과의식조사인부임	16,589	
43	“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00,000	
	소 계	2건	26,000	
97	자치행정국	지방행정연수대회연구논문모음집	6,000	
101	“	민간단체편람제작	20,000	
	소 계	1건	70,000	
243	농수산국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행사지원	70,000	
	소 계	2건	57,000	
357	문화체육 관광국	공원시설계획변경용역	15,000	
358	“	컬링장건립설계용역	42,000	

【증액조서】

(단위 : 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액	비고
	계		489,589	
16	의회사무처	ENG카메라 운용 용역비	50,000	
		예비비	439,589	

【부기조정】

(단위 : 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예산액	비고
364	문화체육 관광국	일월산관광자원개발사업	100,000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해지역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

- 태풍 제15호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도내에 많은 지역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극도의 혼란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금번 경북도내 태풍피해 상황은 전 시·군에서 인명피해 38명, 이재민 3,298 가구 8,997명, 건물침수 3,659동, 주택파손 1,451동 농경지침수21,312ha, 도로 등 공공시설물 4,169개소 파손 등 피해액이 3천6백1십5억원이 (잠정 2002. 9. 4현재)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복구를 위해 전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상황이 도내 전체로 분포되어 있고,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주로 농작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등 생활기반을 상실할 정도로 극심하여 실의에 빠진 도민에게 재기의 희망과 의욕을 주고,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 특단의 종합적인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활기반 시설을 잃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빠른 시일 내 복구대책을 강구하여 피해주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태풍 “루사” 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막대함으로 지방재정으로 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우심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별재해지역” 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2. 그리고 경북지역 낙동강 수계의 제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도내 시군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복구비 및 정비에 대하여 국비가 대폭지원 되어야 한다.
4. 농업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에 대하여 현행 국고지원 25%~50%로 되어있는 것을 모두 80%~90%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각종 피해단가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추진되어야 한다.
5. 특별재해지역 범위의 선정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시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또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대하여도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6. 태풍이나 집중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나, 인재나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 또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시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원스톱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히 명시하여야 한다.

2002년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2. 9.

제안자 : 도의회 운영위원회

1. 주 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적합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개발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합리한 조례정비 및 제도개선,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 개발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자치의정 활동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평소 지방자치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추천 1명, 의장추천 3명으로 하며
- 활동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경 상 북 도 의 회 의 건

< 공간구조 구상>

- 지역간 공생적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 구체적 계획 제시
 - 광역도시권내 1차 중심도시, 2차 부심도시, 3차 전원도시가 포괄적 정비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각급 도시의 실천 의지가 담긴 전략적 · 구체적 계획제시가 미비함.
 - ⇒ 도시간 균형적 · 공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 추가제시.
 - ⇒ 경산시 인구계획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조정
- 지하철 노선 경북지역 연장에 대한 추진계획 반영
 - 광역순환 교통망 및 내부연결교통망 등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도로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경산, 영천지역을 연결 하는 대구지하철 노선연장 사업은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만큼
 -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에 구상차원이 아닌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경산지역의 13만명 대학생과 영천, 경산지역 주민숙원사업인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강구.

□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 7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구조계획상의 농수산물 유통거점을 경북지역 시·군에 계획

- 경북지역에서 생산되어 대구도시권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대구 인접 시·군에 계획하여 생산자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균형개발을 도모함이 타당함

□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된 광역공급시설인 혐오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에 반드시 합의된 경우에만 계획 및 추진한다.

- 광역공급시설인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편의시설인 용수공급시설, 물류시설, 정보통신시설, 운동장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하고,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자체 도시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항은 광역권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대구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에 따라 4~5등급지 위주로 부분해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 전·답 등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 동안 묶여있어 개발제한 구역외 토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마저 성립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이 어려운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내 70% 이상되는 임야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여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 등은 해제추진

□ 대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사업 계획 추가

- 요즘 영세서민들은 주택 및 전세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 임대주택용지 확보와 환경친화적·계획적 개발로 토지이용도 제고방안 강구

□ 2중규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0.7km²), 공원보호구역(4.9km²) 등 5.6km²의 이중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각종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인력,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심리적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 강구

□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보상 대책 강구

- 개발제한구역 계속 존치지역은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계속 존치되는 취락지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시 용적을 및 건폐율 확대, 행위 대상 시설의 확대 등 건축규제를 지금보다 대폭완화와 아울러 마을진입로 확장·상하수도 설치·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기반 시설확충, 소득증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건강의료보험의 지원 및 세제혜택,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혜택부여 등 직·간접적 보상방안 강구

의정활동보고서(제171회 임시회)

2002. 9 인쇄 / 2002. 9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